

청주 테크노폴리스 A9BL 힐데스하임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43-250-000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청주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최초 당첨자발표일('23.04.26)로부터 1년 (현재 전매제한기간 도과, 소유권 이전등기 후 매매 가능)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2.04.(수)	26.02.09.(월)	26.02.12.(목)	26.02.13.(금)	26.02.24.(화)

-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5년 08월 13일(수) 준공되어 보존등기가 완료된 아파트로 건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반드시 현장 주변 및 단지 여건, 주변시세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자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인한 취소세대이며, 준공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로 현재 상태로 분양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대상 동호를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계약체결 대상자에 한하여 동호 개방 예정)
 - 준공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품목과 현 상태를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확장 및 마이너스오피스,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청약시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 알선을 하지 않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실행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을 때(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당첨 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onenc.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2.04.(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30004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4.07.(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128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2.09.(월)	26.02.12.(목)	26.02.13.(금)	26.02.24(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청주 테크노폴리스 A9BL 힐데스하임 모델하우스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612)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당첨 제한기간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3.04.26)로부터 가산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도과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아파트에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 사업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 확장계약서 및 추가선택 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중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식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청 공동주택과-4755호(2026.01.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1196번지 일원(청주 테크노폴리스 A9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7~29층 5개동 총 440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1세대[특별공급 1세대(생애최초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2월(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단, 잔금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생애 최초
민영 주택	2026930004	01	084.9400A	84A	84.9400	25.1356	110.0756	60.4869	170.5625	49.3971	1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수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	(계약시)	공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084.9400A	84A	102동 1601호	77,386,099	309,613,901	387,000,000	77,400,000	309,6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약식표기	동·호수 구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20%)	잔금(80%)
			계약시	공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84A	102동 1601호	9,400,000	1,880,000	7,520,000

■ 추가선택품목 금액

(단위 : 원)

약식표기	동·호수 구분	추가선택품목금액	납부금액 및 일정		추가선택품목
			계약금(20%)	잔금(80%)	
			계약시	공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84A	102동 1601호	8,300,000	1,660,000	6,640,000	■ 천정형에어컨 - 선택3[5대(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슬라이딩도어(수동) - 알파룸

· 상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사항입니다.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최초 계약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변경·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세부 품목 및 공급금액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23.04.07)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4-1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단,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 02. 04.(수)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2.12.(목) ~ 2026.02.21.(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2.1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FAX 수신 문서 가능)
	○		소득증빙서류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아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혼인 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부적격 통보 받은자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용 확인하는 공문 ■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형차가 주택 등)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세대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신청 시 추가사항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04)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동일직장,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전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 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산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사업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③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 시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② 세무서 ③ 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②, ③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④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 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④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① 세무서/해당 직장
무직자 (만19세이상)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월별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서류제출로 소득기간을 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소유증빙	① 부동산 소유현황(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전체 발급)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자산가액 증빙	① 소유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② 소유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③ 소유부동산이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 주민센터 ■ 이택스(etax.seoul.go.kr) ■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종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주민센터 ■ 지자체 축산과 ■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자치단체)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시군구청(또는 위택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575701-01-437155	(주)대한개발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납부방법

구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공사비	KB국민은행	575701-01-437168	(주)대한개발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방법

구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KB국민은행	575701-01-437168	(주)대한개발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점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본 모집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 및 분양홍보물에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사업계획승인도서 기준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실 설치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Ⅶ)으로 표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16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제5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제15조제1항 관련)에 의거한 항목별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공시항목	금액	구분			공시항목	금액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	23,165,817,000	건축비 (58)	공사비 (51)	건축 (23)	유리공사	803,930,778
			기간이자	905,564,971				타일공사	1,589,165,235
			그 밖의 비용	1,214,054,538				돌공사	1,603,689,018
			필요적 경비	8,770,550,981				도장공사	981,543,465
건축비 (58)	공사비 (51)	토목 (13)	토공사	2,931,521,806				도배공사	1,041,803,391
			흙막이공사	0				수장공사	1,925,694,288
			비탈면보호공사	0				주방용구공사	1,335,764,968
			옹벽공사	301,637,760				잡공사	2,057,570,306
			석축공사	0				급수설비공사	924,283,526
			우.오수공사	1,012,557,143				급탕설비공사	924,283,526
			공동구공사	0				오배수설비	988,448,982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323,454,846			위생기구 공사	790,256,578	
			도로포장공사	1,277,543,318			공조설비	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0			난방설비공사	1,183,793,368	
			정화조시설공사	0			가스설비공사	261,520,180	
			조경공사	4,260,497,613			자동제어 설비공사	199,198,515	
			부대시설공사	264,986,175			특수설비공사	0	
		건축 (23)	공통가설공사	2,636,145,036			전기설비공사	7,591,074,400	
			가시설물공사	523,489,638			정보통신공사	4,035,365,100	
			지정및 기초공사	774,386,802			소방설비공사	5,912,279,100	
			철골공사	0			승강기공사	1,245,277,824	
			철근콘크리트공사	26,525,610,367			그 밖의 공사비(2)	일반관리비	5,735,015,000
			용접공사	0				이윤	6,777,745,000
			조적공사	972,195,042	간접비 (6)	간접비	설계비	2,005,054,000	
			미장공사	1,789,570,283			감리비	2,506,868,368	
			단열공사	542,185,959			일반분양시설경비	3,900,600,904	
			방수,방습공사	757,190,238			분담금 및 부담금	2,373,720,763	
			목공사	1,626,557,877			보상비	0	
			가구공사	4,544,614,427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7,334,695,998	
			금속공사	1,729,385,805			그 밖의 비용	11,934,902,017	
			지붕 및 흙통공사	170,767,892			합 계	167,975,200,000	
				창호공사	2,991,369,885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택지비	택 지 비		23,165,817,000	건축비	건 축 비		121,984,310,352
택지비 가산항목	법정 택지이자		905,564,971	건축비 가산항목	지상층 구조형식 가산비		
	취득세	취득세	926,632,743		법정초과복리시설 건축비		951,620,000
		교육세(취득세)	92,663,274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	홈네트워크	3,426,700,000
	재산세	재산세	97,296,437			정보통신특등급	967,265,000
		교육세(재산세)	19,459,284			에어컨냉매배관	812,671,000
		재산세도시지역분	68,107,505			기계환기설비	1,260,872,000
	등기수수료	보수료	9,556,605		공동주택성능등급		1,888,496,120
		인지세	338,690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1,776,162,334
	말뚝박기 공사비		6,623,524,000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397,519,000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1,896,259,000		법정 개정	전기자동차충전시설	30,497,000
	택지와 관련된 경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50,768,000		사업승인조건	흡착, 흡방습 친환경재료	
	-					외관특화공사비	
	-					법정초과조경설치비	
					분양보증수수료		423,390,010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 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주)대한개발	(주)원건설	(주)원건설산업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7(북문로2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7(북문로2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평기산양길 29-4
법인등록번호	150111-0180591	150111-0015889	150111-0091235

■ 일반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의 구조변경(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도로 및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지구 내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계약자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함.

■ 설계 및 시공관련 유의사항

(1)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기로 합니다.
- 준공 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지연, 세대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공동주택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설계 및 시공관련 변경사항

- 본 공동주택은 구조/성능/마감/상품/디자인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줄눈,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난간, 단지 시설물 등이 분양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는 로고의 개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및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사항)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 종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모형은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발코니확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확장형 선택시, 아파트외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재질, 높이 등)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부대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및 식재의 위치는 단지의 조화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현장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이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일부 동/세대에서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는 이사 시 차량 접근 동선, 주동의 위치 및 단위세대 창호크기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형 이삿짐 및 중량물의 운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단지 내 단위세대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재료, 입면, 벽체마감 등) 및 외부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는 시공 상의 문제나 인허가과정, 허가권자 경관자문결과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단지내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엘리베이터홀은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 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구조개선등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중 홍보물에 기재된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사용된 각종 홍보용 자료 및 CG, 일러스트 등은 예비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계약자용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단위세대 및 단지외관, 사업구역 내 각종 시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각종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각 중 인쇄물에 표현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중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 중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사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팸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기구의 수량 및 배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4) 명칭

- 단지 및 단지내 명칭, 외벽로고사인,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외부시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와 단지 외부와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인접대지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근린생활시설 포함)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의 위치 및 사양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 주동,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마감은 디자인 개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조경시설물의 경우 견본주택 모형 및 분양 카탈로그 상에 표현된 것은 참고 이미지이며, 허가권자의 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함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팬룸, 제연팬룸 등의 급배기구), 상가 등의 단지시설물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현장여건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입주자의 개인 및 단체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구조 형식상 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또는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경비실 및 문주, 그 밖의 조경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경우 시야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대지경계 구간에 방음벽 (8m이상)이 설치 될 예정으로 시야 간섭 및 미관저해 등이 인접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계약자는 견본주택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음벽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설치과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음벽은 지자체 및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자에 의해 단지 내에 설치되며 방음벽의 유지관리 책임은 입주 후 입주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음벽은 당사와 상관없이 설치내용의 변경 및 설치여부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 부출입구 인근도로는 청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의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L=24.5m) 계획으로, 4m차로를 6m차로로 확폭 하였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단, 추후 도로여건 등 제반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북측으로 공동주택부지와 인접하여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 공공보행통로(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6)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지하주차장의 단지 내 입구 위치에 따라 일부 동/세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주변도로, 상업시설 인접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옥외운동시설에서 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의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시설(헨룸, D.A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인접 주동/세대의 경우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쓰레기보관소위치에 면하는 동/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보관소는 총 6개소(공동주택5개, 근린생활시설1개)로 인접한 세대에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각 동의 위치에 따라 거리에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장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출입구, 차량 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에 인접한 동/세대는 소음 및 분진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 전동 지상 또는 지하 인근
 - 주민공동시설 : 102동하부 (지하1층)
 - 펌프실, 저수조(아파트, 근린생활시설용) : 102동~103동 사이 지하2층
 - 주차장 램프 : 101동, 102동~103동 사이
 -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 : 104동~105동 사이 지상1층
 - 어린이놀이터 : 101동~104동 인근
 - 기타시설은 배치도 참고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 장애인 보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에 따라 동현관 상이 및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및 악취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반드시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단지 내 보안 및 보행자/차량 안전을 위해 보안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민원제기 및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시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세대가 속한 동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천장고는 1층 세대 2.4m, 기준층 및 최상층 2.3m이며, 발코니 확장시 거실에만 우물천장이 설치됩니다.
- 세대창호의 나누기, 크기 및 난간대의 제품, 높이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본공사시 견본주택과 위치 및 색온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 (욕조 및 샤워부스 제외)
- 욕실 내 약세사리류 및 욕실장 등의 위치, 크기, 높이 등은 본공사시 현장상황 및 사용여건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외부창호는 외관디자인 및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에 따라서 마감재 및 색상이 다릅니다.
- 주방가구의 쿡탑 후면의 뒷선반은 설치되지 않으며, 뒷선반의 높이, 깊이, 형태 등에 따른 사용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정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 용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 관람을 통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 색상 및 패턴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 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사업주체가 임의조정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창호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실제 사용가능한 발코니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우·오수 드레인, 선풍통 등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에 수전,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설치 개소와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하며,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는 본 공사시 세부 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타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알파룸, 다용도실, 욕실(부부, 공용) 출입문은 본공사 시 ABS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도어로 시공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적용되며 보일러의 배기구는 동 외벽에 설치됩니다.
- 주동의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배관의 위치, 형태,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는 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냄새 및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호 등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 및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에는 난방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가구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앞 실외기실 바닥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 천장에는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 및 전열교환기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층 교차 시공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이 생길 수 있으며 1층세대 및 필로티 상부 2층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보일러와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정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의 형태(평면, 외관)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욕실가구, 거울 후면 등에는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의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내부마감 석재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식탁위치에 정하였으며, 계약자 요구로 인한 위치이동은 불가합니다.
- 안목치수는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두께차이로 인해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바닥단차는 견본주택과 본공사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환풍기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덕트/PIT 공간은 임의로 벽체를 철거하여 불법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합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정,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 시공, 불박이장 및 주방가구 천정/후면/측면마감재 미 시공 등)
- 본 공사 시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디자인, 설치 간격, 구조체 및 하드웨어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쿡탑 주변 주방 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디딤판, 욕실젠다이 등에 사용되는 인조석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패턴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제조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조명기구,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 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정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재 시 피난 공간(관련규정에 근거)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 및 마루마감재는 제공되는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 (비확장)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일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은 세대 직배기로 시공되고, 최상층세대의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해 벤트관이 설치되어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충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항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타입별, 배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본공사시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제조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정에 전열교환 환기유닛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정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상층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한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측면 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한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벽체에 단열재가 부착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효천정과 유효실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사시는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각 실, 실외기실, 대피소 등 외부창호, 그릴, 출입문 등은 계약 미포함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실(하향식피난구)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플러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저층부(2~3층 이하) 및 필로티 내부공간은 석재, 석재뿔칠, 수성페인트 등을 혼용하여 시공하며, 고층부는 수성페인트로 시공됩니다.
- 실외기실의 상부그릴창호는 개폐가 가능한(여닫이창) 창호로써, 바람 및 외부요인에 의한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또는 비상시에만 단시간 개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용시설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 등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증, 속도, 탑승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공간만 제공되며,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피트니스클럽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이 지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부대복리시설 내 임의의 공간에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부대복리시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PIT, PD, EPS TPS실 등 내측 벽체 및 바닥은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 내부 마감재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트랜치는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별도의 구배 계획이 없으므로 일부 부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670대, 근린생활시설 10대이며,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향후 관련법 개정 및 개인/단체에 의한 추가요구가 불가능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실내 및 실외, 지붕 등에 설치)로 인해 인접 동/세대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주출입구 인근 2대)은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아파트 주차는 지하주차장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주차장의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시 일부 동선이 중복되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실 공간에는 실외기 설치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동/세대의 경우 불편을 느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 이외에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엘리베이터는 각 동간의 거리에 따라서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착공도서에 준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주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등 단지내 공용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동으로부터의 접근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에 의거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야간조명으로 인한 세대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체(식당, 관람집회시설 등)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와 함께 대지지분은 구분되어 있으나 향후 분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차로, 계단실, 조경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유권, 일방적인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을 위해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 혹은 이용객의 단지 내 진입이 불가피하며, 향후 분쟁발생 시 입주민과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가 관리규약에의해 분쟁사항을 조정해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하역장, 차량동선 등이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면하지 않아 인접도로가 혼잡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호실은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기둥 및 벽체의 위치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각 호실의 층고, 천장고, 창호높이 등은 상이하며, 본공사시 근린생활시설 진입레벨 및 외부여건에 의해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미관을 위해 타 호실의 천장으로 통신설비, 배관, 배선, 케이블트레이 등이 관통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본공사시 창호의 높이 및 형태, 환기창 설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주택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 및 조경식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일한 레벨이어도 1층은 지하1~지상1층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및 주차장 접근의 형평성이 각 주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천장 마감은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데크 시공시 구조기능과 관계없는 데크의 구김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미관상의 이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후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주차장 분쟁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관리규약등을 통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 주차 차단기는 주출입구에 1개소, 부출입구에 1개소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동출입구 및 지하홀의 층고는 위치별로 상이하며 이로 인한 천장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차량통행구간 유효 높이 2.7m, 지하2층 차량통행구간 유효 높이 2.3m, 주차공간 천정고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소유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시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에 경비실, 통합형 문주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형태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서 주동 출입방식은 필로티형, 동출입구형, 필로티+동출입구혼합형으로 설치되며, 각 동별 규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자전거보관소는 지상 및 필로티 내 위치해 있으며, 제품사양,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계전기 설비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세대 내에 개별보일러가 설치되는 바닥 난방 방식입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는 세대 내 싱크장 하부, 신발장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비확장세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은 실(거실, 침실1 제외)에는 선풍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추후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월패드는 성능개선으로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정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101동~103동 지붕층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은 세대 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위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중계장치는 104동 지하1,2층(제연헬룸 및 피트)에 설치됩니다. 전파측정 후 설치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104동 주동에 면하여 지하층에 전기실/발전기실, 102동 주동에 면하여 지하층에 아파트 기계실, 103동 주동에 면하여 근린생활시설 기계실/저수조가 배치되어 있어 시설관련 급배기 DA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어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및 단지 외부여건 관련 사항

- 당 사업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현황은 현재 계획을 반영하여 표현하였으며, 향후에도 도시개발사업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가 속한 청주테크노폴리스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관련한 각종 평가(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구역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 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공공공지, 학교, 하천, 광장 및 각종시설 등은 미확정 상태로 토지이용계획, 실시계획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구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상업시설 등)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자연환경(백로서식지, 송절방죽, 신정방죽)에 의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전기, 난방시설, 기타처리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주체와는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접한 도로에 대하여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등 인허가에 따라 출입구 인접하여 교차로가 신설되거나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청주공항 및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관련 소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초등학생 : 청주내곡초 배치 불가, 인근학교 배치(새터초등학교)
 - 중 학 생 : 청주시 제2중학교군 내 분산배치
 - 고등학생 : 청주시 및 도내 전체 고등학교에 지원 분산 배치
- 현재 학구인 청주내곡초등학교에 학생배치가 불가능하며, 초등학생이 원거리로 장기간 배치됨에 따라, 준공 전 청주시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하여 신설학교 설립 전까지 통학버스를 운영 예정입니다.

(11) 기타

- 본 공동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추후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각 동 옥상에는 통신장비(TV공청 안테나, FM, 디지털 안테나, 위성안테나 등)가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구조물,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중계장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및 피뢰설비,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바람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차량도로와 인접한 주동에는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생과 인접한 주동에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어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형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측벽이 외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므로 해당세대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4동 주동에 면하여 지하중에 전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소음, 진동,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주변도로와 레벨차이가 있으므로 일부 보행출입구는 계단, 경사로 등을 통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계약전 단지 보행출입구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주변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A/C실외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피난공간(하향식피난구)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사 및 시공사는 일절 책임이 없습니다.
-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식재계획으로 인해 세대내 음영이 생길 수 있으며, 벌레 및 곤충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을 위해 단지내 교차로에는 반사경 등이 부착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시공 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준공도서, 공사시방서(사용승인),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순으로 정합니다.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43-250-0005)

※ 본 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